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미국 강도죄의 분석

박종렬*, 노상옥**

A Information Data-based Analysis of Robbery Crimes in America

Jong-Ryeol Park*, Sang-Ouk Noe**

요약

본 논문에서는 폭력 사건 범-특히 강도에 의해 상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범죄피해 발생수가 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태도와 범행 대상이 되는 빈도와 상관계 간에 형태의 변화도 볼 수 있다. UCR와 NCVS자료를 통해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정점에 달한 이후 범죄피해 유형 중 다수는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누적위험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등 위험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집단별로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Keyword : 폭력범죄, 강도죄, 누적위험, 차등위험, 범죄피해자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people harmed by violent offenders, especially by robberies. Trends capture changes in victimization rates overtime, while patterns indicate connections between the attributes of victims and the frequency with which they are targeted. Data from the UCR and the NCVS indicate that many types of victimization are taking place less frequently since their peak years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Cumulative risks indicate the odds of being victimized over the course of a lifetime. Differential risks underscore which categories of people are victimized more often than others.

▶ Keyword : Violent Crimes, Crims of Robberies, Cumulative Risk, Differential Risk, Victim of Crime

• 제1저자 : 박종렬 • 교신저자 : 노상옥

• 투고일 : 2011. 12. 20, 심사일 : 2012. 01. 03, 게재확정일 : 2012. 01. 10.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Dept. of Police & Law, Gwang Ju Women's University)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The Doctor's Course, of Pol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I. 서론

미국에서는 강력범죄를 Violent Crime이라 하는데 이를 강력범죄 또는 폭력범죄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UCR (Uniform Crime Report)의 Violent Crime Definition에서 “강력범죄는 4가지의 범죄 즉, 살인, 강간, 강도, 상해죄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강력범죄는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판례위주의 불문법국가로서 특별한 형법전이 따로 없다. 그러나 범죄통계의 집계를 위해서 미국 FBI에서 관장하는 표준범죄보고 프로그램 (The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에 의해서 범죄를 두 그룹, 즉 파트 I 범죄와 파트 II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파트 I 범죄는 그 심각성과 발생빈도로 인하여 범죄지표(crime index)를 구성하게 되며 매달 법집행기관에 알려진 파트 I 범죄 건수들이 집계된다. 파트 II 범죄에 대해서는 체포와 관련된 자료들만이 집계된다. 전통적으로 범죄지표 (파트 I)에는 8가지 유형, 즉 살인, 강간, 강도, 중(특수)폭행, 주거침입, 절도, 자동차절도, 그리고 방화가 포함된다. 파트 II 범죄에는 단순폭행, 위조, 사기, 횡령, 장물, 손괴, 무기관련, 마약관련, 도박,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체포와 관련된 자료들만이 보고되어 집계된다.[1]

본 연구에서는 UCR (표준범죄보고서: Uniform Crime Report)의 자료와 NCV (국립범죄피해센터: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강력범죄 중 강도죄의 의미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실태를 고찰한 후 범죄피해 예방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강도죄에 대한 이론적 개관

강도죄는 절도죄에 두 가지 요소를 추가로 요구하는 범죄이다. 첫째, 피해자의 신체나 그 사람의 근처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재물의 절취가 폭력의 사용이나 폭력사용의 위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행해져야 한다. 즉 이러한 두 가지 추가요소에 의하여 가중된 절도죄가 강도죄이다. 강도죄가 성립하기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도죄는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유체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절도죄와 달리 절취(taking) 만을 요구하고 절도의 성립요건인 재물의 이동(asportation) 을 별도로 요구

하지는 않는다. 동산의 절취가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폭력은 상대방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폭력의 위협은 피해자 자신이나 가족, 친척이나 절취를 할 당시에 피해자와 같이 있던 사람의 생명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할 정도의 폭력이어야 한다. 재산에 피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은 피해자의 집을 파괴하겠다는 위협을 제외하고는 강도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위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포를 느껴야 한다. 실제로 공포를 느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런 정도의 위협으로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항변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은 물건을 빼앗기 전이나 빼앗는 것과 동시에 혹은 물건을 빼앗은 직후에 빼앗은 물건을 계속 점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폭력을 행사하고 며칠 후에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훔친 후 며칠 후에 그것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에 물건을 낚아채는 것이나 소매치기는 폭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가 아니다. 소매치기를 한 후 즉시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힘으로 억압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나 그 즉시 행해진 것이면 강도죄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물(동산)은 피해자의 몸에서 빼앗아 가거나 피해자가 근처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의 몸이라는 것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가는 것과 같이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도 포함한다. 근처에서 빼앗아 간다는 것은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이 없었으면 빼앗아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곳에서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한다. 폭력이나 위협이 없더라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이 멀리 있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거실에서 위협을 하면서 방에 있는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총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행해지는 강도죄에 대해서는 중강도(aggravated robbery)라고 하여 각 주에서 중하게 처벌한다. 강도는 절도죄의 한 유형이므로 절도죄와 강도죄를 동시에 처벌할 수는 없다.[2]

III. 강도죄에 대한 실태

1. 강도죄 발생건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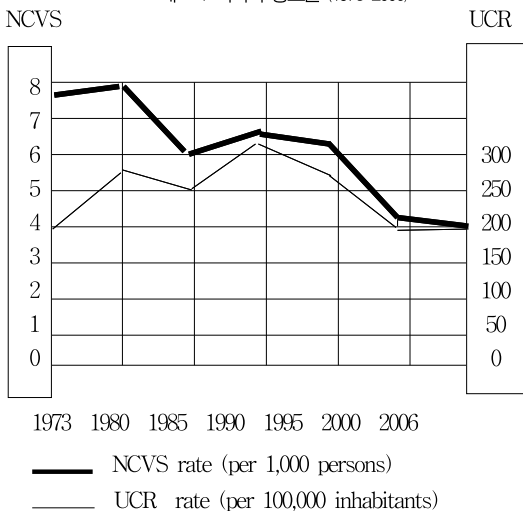
그래프 1에서는 197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사회의 강도사건 발생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UCR 수치는 관계 기관에

신고 된 강도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NCVS 수치는 1992년 재설계한 연구 조사에 맞추어 조절한 수치이다. UCR 수치를 나타내는 선은 1977년에 급증하여 1981년에 정점에 달한 다음 1985년까지 급감하다가 1990년대 초에는 급증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이후 노상강도와 총기사용 강도사건은 2001까지 감소하다가 21세기 초 10년간 증가하지 않더니 2006년에 약간 증가하다가 2007년 약간 감소한다. NCVS 수치는 UCR 수치 추세와 유사하기는 하나 동일하지는 않다. NCVS 수치에서는 1974년과 1978년 사이에 감소하나 1981년까지 반등하는데 이 시기에 최고조에 달하다가 1980년대 초에 급감하다가 다시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증가한다.

그래프 2에서는 197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내 중강도 사건 발생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NCVS 수치를 1992년 재설계한 조사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그 이후 강도 사건 발생 건수는 1990년대 후반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계속 감소한다. 그러다가 1993년과 2002년 사이 65%에 달할 정도로 감소하더니 NCVS 조사 보고서 작성 이래 최저치에 달하더니 다시 2006년에 접어들면서 약간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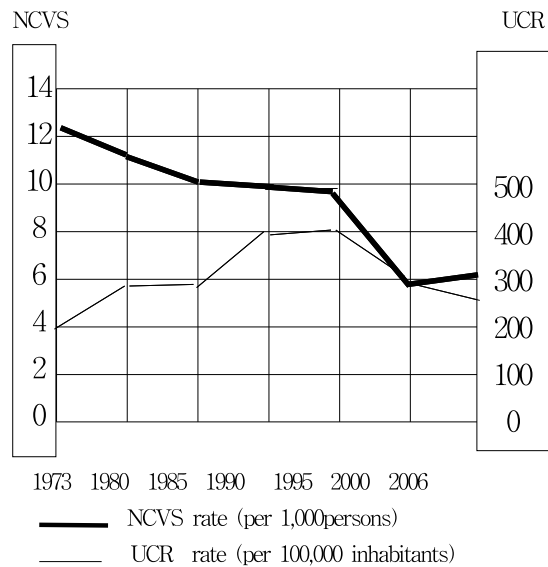
그래프 1, 2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래프는 강도범죄가 1990년대 초의 사상 최고치에서 급감하고 있다는 최소치를 확인해주고 있다. 2007년도 UCR수치에서는 강도범죄가 2006년도에 소폭 상승한 다음 약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초 강도사건 피해자 발생률처럼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려도 안전하다고 본다.

그래프 1 미국의 강도율 (1973-2006)



Graph 1 : Trends in Robbery Rates in the United States, 1973-2006.

그래프 2 미국의 중강도율 (1973-2006)



Graph 2 : Trend in Aggravated Assault Rates in the United States, 1973-2006.

2. NCVS를 통한 강도사건 분석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보다 거의 모든 피해자가 살아남아 결국 나중에 자기들이 당한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경찰이 사건을 해결한 사건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를 FBI의 UCR에 매년 수록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통해서 사건의 수와 범인의 신원을 수록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UCR이 아니라 NCVS는 범죄 발생 수, 범인, 범행 방법, 범행 장소, 범행 시기, 피해품에 관한 정보, 상해 여부, 도난당한 물건의 회수율, 범행에 대한 대응 등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 출처이다. 사건 정보 파악에 응한 응답자들은 과거 6개월 이내에 강도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런 진술은 풍부한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응답자들은 강도가 사용한 무기와 강도에 관한 신원과 강도들이 원하는 것을 강탈해 갔는지 강도 발생 장소, 시기, 저항 여부, 상해 여부, 상해 정도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서 11세 이후 강도를 당한 경험이 있는 미국인들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어낸다. 이 일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단독 범행에 한 사람의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만을 분석한다. BJC의 NCVS 조사원들이 밝혀낸 바로는 2006년에 자기들의 조사에 응하여 강도를 당한 경험을 소개한 사람들 중 57%가 이미 경찰의 조사에서

도 강도를 당한 경험을 소개하였다는 사실이다. 육체적 상해와 상당한 물질 손실을 당한 강도 피해자들이 사법 당국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았다.

인종별로는 흑인(75%)이 백인에 비해서(53%) 신고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훨씬 낮았다(41%).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56%). 이에 반해 10대들은 경찰에 의지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40%) 65세 이상의 성인들은 높았으나(75%) 다른 연령층의 경우에는 40%와 75%의 중간 정도였다. 범행 장소로는 피해자의 집 또는 집에서 1마일 이내의 거리에서 강도를 당하고 있으며(61%) 시간대별로는 야간(오후 6시와 오전 6시 사이)에 당하고 있었다(58%).

강도의 주요 동기는 절도이다. 강도라고 해서 항상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3 즉, 32%는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강도 사건으로 피해자가 당한 경제적 손실은 평균 175불이다. 빼앗긴 물건, 예를 들면 휴대용 전자도구, 사진기, 보석류 등을 되찾는 경우가 가장 흔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갑, 현금 순이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또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빼앗긴 물건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도 85%에 달하는 등 높은 편이었다. 범죄로 인해 근무 시간의 10% 이상에 달하는 시간 손실을 보고 있었다. 강도 피해자들이 강도범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76%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범인과 일면식도 없는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편이다. 강도로는 남성이 83%에 달할 정도로 높다. 2006년도에 발생한 강도 사건 중 약 2/42 정도는 범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 일종의 무기를 사용한 범인 중 1/5 (22%) 이상이 화기를 가지고 있었다. 무장 강도 중 나머지는 칼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흔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날카로운 무기와 둔기를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는 상대방을 겁주어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무장 여부와 상관없이 강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협력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 때 폭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 강도가 쉽게 무너지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좋아할 수 있으며 공범을 과시하는 기회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범행 중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범인이 공포에 빠지거나 화가 나거나, 비웃거나 경멸, 병적 잔혹성을 보이는 등 자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물론 폭력을 행사하는 편이 도움이 되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상대방이 범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추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상황이 끝난 다음 폭발물을 사용하

는 목적은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거나 놀라게 하거나 피해자,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구경꾼들을 제압하여 경찰을 부르는데 망설이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여러 동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강도는 상해를 가하지 않고 있다. 강도에 성공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중 1/3 이상 정도만 상해를 당하고 있다(남성 34%, 여성 39%, 흑인 46% 백인 35%). 그렇기는 하지만 상해를 모면한 사람들은 붙잡히거나 밀어 넘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부상을 당한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베이거나 긁히거나 타박상을 입기도 하고 맞아 피부가 부어오르기도 한다. 심각한 상처 예를 들면 골절, 이가 빠지거나 의식을 잃거나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의 충상을 입는 경우도 적은 수이기는 하나 없는 것은 아니다. 9명의 강도 피해자 중 한 명꼴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 경우 통상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다. 강도의 공격에 저항하는 문제는 아주 논란이 많고 실질적인 문제로서 전국 범죄 피해 연구 조사를 수행한 연구원들이 이 문제를 조사한바 있다. NCVS 연구 조사 요원들은 두 종류의 자기 보호 전략을 질문해보았다. 예를 들면 총기, 칼, 기타 무기를 휘두르거나 사용하는 등 폭력 행사를 불사하거나 맨손으로라도 싸워 범인을 격퇴하거나 제압하는 등 폭력적 전략을 질문해 보았다. 다른 질문에서는 비폭력적 전략으로서 도주하거나 고함을 질러 범인을 놀라게 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범인을 위협하거나 범인을 설득하는 일이다. 물론 범인과 대치하고 있는 순간에는 위에서 언급한 전략 말고도 여러 전략을 이용할 것이다. 다양한 자기보호전략을 종합해보면 2005년도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강도 피해자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남자는 56%, 여성은 64%, 백인은 58%, 흑인은 70% 순이었다. 범인을 누구인지 알고 있거나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대체로 저항하는 경향이 더 강하나(67%) 안면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56%). 아주 흔히 이용하는 자기보호 전략으로는 물리력으로 저항하거나 범인을 제압하려고 하는 전략이고 그 다음으로는 도주하거나 숨거나 범인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겁을 주거나 고함을 질러 도움을 청하거나 하는 전략이다. 맨손으로 범인을 격퇴하는 전략도 흔히 사용하는 전략이기는 하지만 자위권 차원에서 무기를 꺼내는 일은 별로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1986년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 항목을 NCVS에 추가하였다. 추가한 질문은 피해자가 한참 범인과 다투고 있는 긴박한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자기보호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결과를 판단했는가였다. 2006년에 대부분의 강도피해자들은 (59%) NCVS 조사업원들에게 자기들이 취한 자기보

호전력이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했는가 하면 8%는 범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대답했다. 나머지 피조사자들은 효과가 있었으며 범인에게 상처를 입혔다거나 효과가 없었고 상처를 입히지도 못했거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등 다양했다. 효과가 있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입은 상처를 줄여주거나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효과로 들고 있거나 범인을 격퇴하거나 도주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거나 물건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고 있다. 불리한 점으로는 오히려 범인의 화를 불러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게 했다고 점을 들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총기나 칼을 휘두르게 되면 유혈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치명적 무기를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로 하여금 순순히 굴복할 마음이 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3]

거의 3,000명에 달하는 일면식도 없는 가운데 일어난 강도 사건을 연구한 보고서를 1973년부터 1979년에 NCVS 조사요원들에게 보고되었는데 이 연구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저항이 통계적으로 보면 강도에게 귀중품을 빼앗기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격과 상해를 덜 받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무력에 의한 저항은 물건을 빼앗기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상해를 당할 가능성은 높았다.[4]

1979년부터 1985년까지 4,500건 이상의 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자위 조치를 취하면 강도에게 귀중품을 빼앗길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무력에 의한 자위 조치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자위 조치보다 훨씬 더 효과적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기를 빼드는 자위 조치가 강도로 하여금 물건을 강탈하겠다는 의욕을 포기하게 하고 상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하나 사실상 아주 가능성이 낮으며 시도하기도 어렵다. 맨손 격퇴, 고함을 질러 도움을 청하는 일, 범인을 겁주어 물러서게 하는 행위는 상해를 당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총기에 맞서 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기는 하나 강도는 실제로 총기를 발사하지는 않는데도 몸이 잔뜩 얼어붙은 피해자는 결국 귀중품을 강도가 요구하는 데로 넘겨주고 마는데 이로 인해 상해를 당하지 않기도 한다.[5]

실제로 강도를 상대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NCVS 연구 조사원들에게 소개한 경험을 토대로 충고하고자 하나 이는 위험하다. 상해와 물질적 손실을 중심으로 강도를 당한 결과를 판단하고자 하면 강도가 사용한 여러 가지 수단, 즉 사용한 무기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주변 사람의 협조 여부, 범인이 피해자의 저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저항의 강도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범행 대상을

더 강력하게 제압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상황에서 제 빨리 벗어날 것인지, 주위 사람들이 개입할 것인지, 또한 상황 요인, 즉 범인의 숫자, 피해자 숫자, 범행 장소, 시간대,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품의 경제적 가치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간단한 일반적인 원리나 가장 안전한 전략을 얻어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돈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다가 망설이지 않고 돈을 일종의 “범죄 세금”이라고 생각해 넘겨주는 등 범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범인으로 하여금 별 소득이 없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오히려 범인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등의 전략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6] 몇몇 연구에서 강도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피해자들은 상해를 당할 위험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범죄 수사관들은 귀중품을 넘겨주어 인체 상해를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다.[7]

3. 강도사건과 살인사건의 연관성

형사가 개입하여 사건을 해결한 강도 살인 사건의 수와 동기를 집계한 UCR 통계를 통해 연간 강도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집계할 수 있다. 또한 연간 발생한 강도 사건의 수를 NCVS 통계를 이용해 집계할 수 있다. UCR 수치가 낮게 나오는 데 그 이유는 경찰이 파악한 사건만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NCVS수치에서는 편의점과 은행 등 시설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였지만 확인 되지 않은 개인상대 강도사건과 금전목적 강도사건 총계 수치보다 낮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83년 Baltimore지역에서 발생한 강도와 유관한 살인사건 연구에서 사망사건을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히 많은 살인 사건에서 형사들은 살인 동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당히 많은 강도, 살인사건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시신마저 감추고 있었다.[8]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강도에 의해 살해당하는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어렵 계산을 할 수 있을 뿐이다(표 1 참조). 공식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몇 가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살인 사건이 줄어들고는 있기는 하지만(1980년 11%, 2000년 7%, 2006년 7%), 범인들은 귀중품을 빼앗아 도주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연간 사망자수는 1980년대에는 범인의 손에 거의 2,500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2006년도에는 1,000명이상으

로 감소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총기를 사용한 강도 사건에서 인사가 사고가 발생한 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강도 사고 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1980년 100만건이 넘음, 2006년 50만건) 돈과 각종 소지품과 함께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로 판단하면 강도사건에서 인사를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피해자 중 약 1%의 1/5 수준이다. 이는 살아남는 자가 99.8퍼센트나 된다는 말이다. 1983년 시카고에서 발생한 100건 이상에 달하는 경찰이 해결한 사건을 연구한 결과 무장강도를 만났을 때는 차라리 돈을 주고 목숨을 지키는 편이 올바른 대처법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9]

표 1 연도별 강도 사건 중 인사가 사고 발생률

Table 1 : Yearly Estimates of Murders Committed During Robberies.

구 분	1980	1990	2000	2006
인사사고 피해자 수 (UCR)	23,040	23,438	15,586	15,854
강도동기에서 인사사고 발생율 (UCR)	11	9	7	7
강도피해자 사망 수 (UCR)	2,488	2,156	1,077	1,041
강도피해자 총 사망수 (NCVS)	1,179,000	1,150,000	732,000	484,000
강도피해자 비율 대 사망피해자	0.21%	0.19%	0.14%	0.22%

4. 강도피해 차등위험

표 2를 보면 2006년도 NCVS통계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강도 사건 발생률은 2.9명 이었다. 이는 곧 11세 이상의 인구 1,000중 거의 3명이 강도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백인 보다는 소수민족이, 중년의 사람 또는 노년층 보다는 젊은 층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독신자가, 유복한 사람들보다는 빈곤층이, 교외나 소도시 거주자 보다 도시 거주자가 차등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을 종합한다면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빈곤층, 젊은 층,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계 미국인 및 흑인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부유하고 나이 많으며 농촌에서 거주하는 백인 여성은 가장 안전한 계층이다. NCVS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차등 위험이 높은지, 낮은지 분류할 목적으로 피해율을 집계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NCVS 통계자료에서는 16세에서 19세 사이에 해당하는 흑인 남자 아이들이 차등 위험이 가장 높은 계층으로서 인구 1,000명당 30명이 강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강도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택시기사, 정원사, 버스 남자 안내원, 식기 세척 종사자, 유원지 직원, 놀이공원 직원, 세차장 직원, 심부름꾼, 신문배달원, 행상, 건축인부 등이다. 그러나 음악가, 작곡가,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역시 평균 이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 검사원, 공장 생산 근로자, 은행원, 안과 의사, 농부, 전문 체육인, 초등학교 교사, 엔지니어, 심리학자들은 가장 낮은 편이다. [10] 최근 연구에서는 소매점 점원, 특히 편의점 점원, 주점 점원 등이 택시기사와 함께 가장 높은 편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수는 가장 낮은 편이다.

표 2 다양한 그룹의 강도범죄 비율(2006)

Table 2 : Robbery Rates for Various Groups, 2006.

피해자의 특징	인구 1,000명당 2006 비율
Overall rate	2.9
Sex	
Male	3.9
Female	2.0
Race and Ethnicity	
White	2.8
Black	3.8
Other	2.7
Hispanic	4.9
Age	
12-15	4.0
16-19	4.6
20-24	7.3
25-34	4.6
35-49	2.0
50-64	1.3
65 and other	1.1
Marital status	
Married	1.1
Widowed	1.1
Divorced or Separated	4.1
Never married	5.6
Family income	
Less than \$7,500	7.2
\$7,500 - \$14,999	6.5
\$15,000 - \$24,999	4.2
\$25,000 - \$34,999	5.3
\$35,000 - \$49,999	1.5
\$50,000 - \$74,999	2.2
\$75,000 or more	2.0
Residence	
Urban	4.4
Suburban	2.2
Rural	1.4

5. 누적위험

누적위험 수치를 6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놓고 (12세부터 70세까지, 70세는 미국의 오늘날 평균 수명이다), 분석하여 현대 미국의 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치에 의하면 어느 시기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도 일생 전 기간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고 진짜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수치에 의하면 60년이라는 긴 기간을 놓고 보면 거의 누구나 평생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절도를 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말하자면 어느 특정 연도에 여성이 강간을 당할 위험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일생 동안이라는 긴 기간을 놓고 보면 인구 1,000명당 80명 즉 8% (12명중 약 1명) 로 높아질 수 있다. 이를 또 흑인 여성을 대상으로 추정해보면 다소 더 높아진다. (11% 즉 9명중 1명에 해당한다). 강도 사건은 훨씬 더 흔히 발생하는 범죄라서 60평생 중 적어도 한 번은 강도를 당할 가능성이 전체 인구 중 30% 정도에 달한다. 30% 중 5%는 적어도 두 번이나 강도를 당할 것이며 1%는 3번 이상 강도를 당할 것이다. 성별, 인종별로 차등 위험을 고려해보면 남성(37%)이 여성(22%)보다 일생동안 강도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흑인이 백인보다 1배 또는 그 이상으로 높다. (51% 대 27%). 폭행을 당할 차등위험이 어느 정도나 될지와 관련해서는 가능성과 가망이라는 표현으로 통계 수치는 물론 실제로 당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한 번은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높는데 네 명 중 대체로 3명은 폭행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폭행 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가하면 위협만 가하다가 실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지 않은 격투도 있고 가혹 내 폭행)도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싸움에 말려들 가능성이 더 높다.(82% 대 62%).

그렇기는 하지만 수치의 근저에 깔려 있는 수학적, 사회학적 추정은 아주 복잡하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율 계산은 1975년부터 1984년까지 발생한 범죄사건 발생 수치를 통해서 구한 상수(常數)를 토대로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1990년대처럼 향후 40여 년간 범죄사건 발생률이 떨어진다면 이 수치는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십여년간 범죄 발생률이 증가한다면 실제 비율은 앞에서 소개한 추정치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표 3 평생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

Table 3 : Chances of Becoming a Victim over a Lifetime.

인종, 성별 나이변수에 따른 범죄피해 유형	범죄 피해 비율			
	Once or more	Once	Twice	Three times or more
RAPE				
All 12-year-olds females	8	8	-	-
Whites	8	7	-	-
Blacks	11	10	1	1
Robbery				
All 12-year-olds	30	25	5	1
Males	37	29	7	-
Females	22	19	2	-
Whites	27	23	4	4
Blacks	51	35	12	15
Assaults				
All 12-year-olds	74	35	24	15
Males	82	31	26	25
Females	62	37	18	7
Whites	74	35	24	16
Blacks	73	35	25	12
Personal theft				
All 12-year-olds	99	4	8	87
All 40-year-olds	82	31	19	33
All 60-year-olds	43	32	9	2

*1975년부터 1984년 범죄 국가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평균 수치를 이용한 수치이며 강간 사건의 경우는 1973년부터 1982년 자료임

* Koppel, 1987[11].

IV. 결 론

강력범죄는 강력한 폭력을 수반하는 대인적 범죄로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위험성이 수반되며 피해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심각한 두려움, 불안감, 정신적 충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강력한 범죄 제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일반범죄에 비해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신속, 정확한 형벌권의 행사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강력범죄 중 강도범죄의 의의 및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UCR과 NCV자료를 통해서 강도범죄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정점에 달한 이후 발생빈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누적위험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등 위험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집단별로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12]

victimization: BJS Technic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 [12]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Wadsworth, Cengage Learning, 70-106, 2006.

참고문헌

- [1] In- Seob Choi, Comparative Analysis of Violent Crime Trends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35-36, 2004.
- [2] Seo Chul Won, The Criminal law of American, Beob won Co, p.194-196, 1995.
- [3] Cook, P. (1987). Robbery violenc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8(2), 357-377.
- [4] Block, R., & Skogan, W. (1986, Winter). Resistance and nonfatal outcomes in stranger-to-stranger predatory crime. Violence and Victims 1(4), 241-254.
- [5] Kleck, G., DeLone, M. (1993). Victim resistance and offender weapon effects in robbe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1), 55-81.
- [6] Zegenhagen, E., & Brosnan, D. (1985). Victim responses to robbery and crime control policy. Criminology, 23(4), 675-695.
- [7] Celona, L., Williams, B., Greene, L. (2005, November 21). Shot Brooklyn cop acted as every victim should. New York Post, p. 5.
- [8] Loftin, C. (1986). The validity of robbery murder classifications in Baltimore. Violence and Victims 1(3), 191-202.
- [9] Zimring, & Zuehl, J. (1986, January). Victim injury and death in urban robbery: A Chicago study. Journal of Legal Studies, 15(1), 1-40.
- [10] Block, R., Felson, M., & Block, C. (1985). Crime victimization rates for incumbents of 246 occupation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9(3), 442-449.
- [11] Koppel, H. (1987). Lifetime likelihood of

저 자 소 개



박 종 렬

2001, 2006 : 조선대학교 법학박사
(상사법, 민사법)

2009 : 광주지방검찰청 국민소통
옴부즈만, 형사조정위원
시민모니터위원

2010 : 광주지방검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위원

현 재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입학홍보처장

관심분야 : 인터넷법률, 사이버범죄

Email : park3822@mail.kwu.ac.kr



노 상 옥

1989-2007 : 포스코 근무

현 재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피해자학, 형법, 범죄학

Email : nosang2424@daum.net